

2000年 改正關稅法

- 法律 第6,046號(1999.12.28) -

□ 主要骨子

- 가. 納稅者의 실질적인 權利救濟를 위하여 稅關長이 納稅額의 부족을 이유로 稅額을 更正하여 不足分을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納稅者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은 納稅者가 稅額更正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課稅의 適法性 여부를 審査請求할 수 있도록 하는 課稅前適否審査制度를 導入함(案 第20條의2).
- 나. 증전에는 産業技術의 研究開發에 사용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物品은 國內製作이 곤란한 경우에만 關稅를 減免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國內製作의 곤란여부와 관계없이 減免할 수 있도록 함(案 第28條의5第1項第9號).
- 다. 증전에는 일정액 이하의 物品으로서 우리나라의 居住者에게 寄贈되는 物品에 대하여만 關稅를 免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寄贈與否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居住者가 受取하는 일정액 이하의 物品에 대하여는 免稅할 수 있도록 함(案 第30條第16號).
- 라. 증전에는 關稅賦課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審査請求와 審判請求를

거쳐야만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審査請求와 審判請求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納稅者의 신속한 權利救濟를 도모함(案 第38條·第38條의2·第43條의2·第43條의4 및 第43條의6).

- 마. 稅關長은 保稅區域에서 藏置期間이 경과한 物品을 효율적으로 賣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機關으로 하여금 賣却과 관련된 業務를 代行할 수 있도록 함(案 第122條 및 第125條).
- 바. 原料에 대한 關稅率보다 이를 이용한 完製品의 稅率이 낮은 不均衡을 보완하기 위하여 加工食品의 原料農産物·半導體部品 및 컴퓨터 設計圖 등의 稅率을 引下하고, 原油로 製造되는 石油製品의 稅率을 引上하는 한편, 버섯, 들깨 등 일부 農産物關稅에 從量·從價 選擇稅를 도입하는 등 關稅率體系를 합리적으로 調整함(案 別表).

關稅法中改正法律

關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第1項중 “基本稅率에 100分の

40을 감한 率의 범위안에서 基本稅率보다 낮게”를 “100分の 40의 범위안의 率을 基本稅率에서 減하여”로 한다.

第16條第1項 前段중 “基本稅率에서 100分の 40을 減한 率의 범위안에서”를 “100分の 40의 범위안의 率을 基本稅率에서 減하여”로 하고, 同條第2項 本文중 “基本稅率에 100分の 40을 加算한 率의 범위안에서”를 “100分の 40의 범위안의 率을 基本稅率에 加算하여”로 한다.

第2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0條의2(課稅前適否審査) ①稅關長은 第17條第6項 또는 第17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稅額 또는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부족한 금액을 徵收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納稅義務者에게 그 내용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9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義務者가 確定價格의 申告를 한 경우
2.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月이내에 第25條의2의 規定에 의한 關稅賦課의 除斥期間이 만료되는 경우
3. 第28條의8第2項 또는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된 關稅를 徵收하는 경우
4. 기타 關稅의 徵收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부적당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納稅義務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稅關長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適法性 여부에 관한 審査(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法令에 대한 關稅廳長의 有權解釋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解釋이 필요한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關稅廳長에게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前適否審査의 請求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課稅前適否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決定을 하고 그 결과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前適否審査 請求에 대한 決定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採擇하지 아니한다는 決定
2.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採擇한다는 決定. 다만, 請求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採擇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3. 請求期間을 경과하거나 補正期間내에 補正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審査하지 아니한다는 決定

⑤第40條第2項·第41條·第43條 및 第43條의5의 規定은 課稅前適否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⑥課稅前適否審査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의2第2項중 “그 處分 당시 다른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이 있었던 것”을 “押留할 수 있는 다른 財産”으로 한다.

第28條의5第1項第9號중 “物品중 國內製作이 곤란한 것으로서”를 “物品으로서”로 한다.

第30條第16號중 “居住者에게 寄贈되는”을 “居住者가 受取하는”으로 한다.

第38條第1項 本文 및 但書중 “審査請求”를 각각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하며, 同條第3項第1號중 “審査請求를 하는 경우 또는 審査請求에 대한 處分에 대하여 審判請求”를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로 하고, 同條第8項 前段중 “審査請求”를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로 하며, 同項 後段중 “第2項·第3項”을 “第3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9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審査請求와 審判請求를 重複하여 제기할 수 없다.

第38條의2第1項에 但書を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2項 및 第3項 本文중 “審査請求”를 각각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로 하며, 同條第3項 但書중 “第43條의6”을 “第43條의3第2項 本文 또는 第43條의6”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審判請求”를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로 한다.

다만, 同法 第11條·第16條·第20條 및 第26條의 規定은 審判請求에 關하여 이를 準用하되, 이 경우 “委員會”는 “國稅審判官會議 또는 國稅審判官合同會議”로 본다.

第43條의2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審査請求期間이 경과된 후에 審査請求가 제기된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關稅審査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關稅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公開할 수 있다.

第43條의4第1項 및 第2項중 “審査請求를, 審査請求人은 審判請求를, 審判請求人은”을 각각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를, 審査請求人 또는 審判請求人은”으로 한다.

第43條의6중 “第38條第2項”을 “第38條第1項”으로 한다.

第58條의2第1項第5號중 “外國貿易機”를 “外國貿易船 또는 外國貿易機”로 한다.

第72條의3第7項을 削除한다.

第72조의4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2條의4(保稅士의 資格등) ①保稅士는 第79條第3號 내지 第8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1. 一般職 公務員으로서 5年이상 關稅行政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2. 3年이상 保稅貨物의 管理업무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로서 關稅廳長이 定하는 教育을 받고 그에 대한 銓衡에 合格한 者

②第1項의 資格을 갖춘 者가 保稅士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하고자 하는 保稅區域을 관할하는 稅關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③稅關長은 第2項의 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

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79條第3號 내지 第8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死亡한 때

④保稅士의 職務, 登錄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9條第6號 本文중 “禁錮이상의 刑”을 “懲役刑”으로 한다.

第122條에 第4項 내지 第8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稅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賣却을 하는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賣却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이하 이 節에서 “賣却代行機關”이라 한다)에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代行機關이 賣却을 代行하는 경우(第125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代金の 殘金處理를 代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節에서 “稅關長”은 “賣却代行機關의 長”으로 본다.

⑥稅關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代行機關이 賣却을 代行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을 지급할 수 있다.

⑦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代行機關이 賣却을 代行하는 경우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賣却代行機關의 任職員”은 “稅關公務員”으로 본다.

⑧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代行機關이 代行하는 賣却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25條에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第12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代行機關이 賣却을 代行한 경우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稅關長의 賣却代金の 殘金處理는 賣却代行機關이 이를 代行할 수 있다.

第137條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稅關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에 대하여 납부할 稅額(關稅 및 內國稅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稅로 徵收한다.

1. 旅行者가 第2項第1號에 해당하는 携帶品(第30條第12號에 해당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申告하지 아니하여 課稅하는 경우
2. 우리나라로 居住를 이전하기 위하여 入國하는 者가 入國할 때에는 輸入하는 移徙物品(第30條第13號에 해당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申告하지 아니하여 課稅하는 경우

第141條第3項中 “指定藏置場 또는 稅關檢査場”을 “指定藏置場·稅關檢査場 또는 保稅藏置場(設營人 자신의 物品을 보관하기 위한 處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第242條의3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稅關長은 國庫歸屬된 物品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國庫歸屬 이전에 발생한 保管料 및 管理費를 지급할 수 있다.

別表중 번호 0706·0712·0801·0802·1001·1207·1512·1514·2002·2304·2710·2804·3701·3705·4804·4805·4911·5504·6903·7020·8103·8408·8414·8419·8421·8479·8534·8539·9002 및 9032란을 각각 別紙와 같이 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審査·審判請求 등에 관한 一般的 적용례) 第38條·第38條의2·第43條의2·第43條의4 및 第43條의6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로부터 적용한다.

第3條(적용례) ①第23條의2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缺損處分하는 것으로서 同 處分을 取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第141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后 최초로 檢査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4條(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중인 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제기된 異議申請으로서 이에 대한 決定通知를 받고 審査請求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와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제기된 審査請求로서 이 法 施行日 현재 審査請求가 進行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決定通知를 받고 審判請求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있다.

번호	품명	세율(%)
	(4) 당근	30% 또는 864원/kg 양자중 고액(율)
	(5) 호박	30
	(6) 양배추	30
	(7) 토란줄기	30
	(8) 고구마줄기	30
	(9) 기타	
	(가) 단옥수수(종자용)	30
	(나) 단옥수수(기타)	30
	(다) 감자	30
	(라) 고비	30% 또는 1,446원/kg 양자중 고액(율)
	(마) 기타	30
	다. 채소류의 혼합물	30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코코넛	30
	2. 브라질넛	30
	3. 캐슈넛	8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아몬드	8
	2. 해즐넛트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8
	3. 호도	50
	4. 밤	50
	5. 피스타치오	30
	6. 기타	
	가. 잣	30
	나. 은행	30
	다. 기타	30
1001	밀과 메슬린	
	1. 듀럼종의 밀	5(3)
	2. 기타	
	가. 메슬린	5(3)
	나. 기타	3

번호	품명	세율(%)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팜넛과 핵	3
	2. 면 실	3
	3. 피마자	3
	4. 참깨	40
	5. 겨자씨	3
	6. 잇꽃씨	3
	7. 기 타	
	가. 양귀비씨	3
	나. 시어넛(캐리트넛)	3
	다. 기 타	
	(1) 들 깨	40% 또는 410원/kg 양자중 고액(율)
	(2) 기 타	3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가. 조 유	
	(1) 해바라기씨유	10
	(2) 잇꽃유	8
	나. 기 타	
	(1) 정제유	
	(가) 해바라기씨유	10
	(나) 잇꽃유	8
	(2) 기 타	
	(가) 해바라기씨유	10
	(나) 잇꽃유	8
	2. 면실유와 그 분획물	8
1514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 조 유	
	가. 유채유(채종과 콜자유)	10
	나. 겨자유	30
	2. 기 타	30

번호	품명	세율(%)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1.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8
	2. 기 타	
	가. 토마토페이스트(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이상인 것에 한한다)	5
	나. 기 타	8
2304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